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심사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개인정보의 보호”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가목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같다)”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항 중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광고성 정보전송 대응센터)

①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1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전송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② 광고성 정보전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4.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의2제1항 중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자등과”를 “제공자와”로 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한다.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22조부터 제32조”를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로, “(개인정보 침해와)”를 “(이 법과)”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한다.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70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7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부한 경우				
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	1,000	2,000	3,000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000	2,000	3,000
라.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2	1,000	1,000	1,000
마.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3	300	600	1,000
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4	1,000	1,000	1,000
사.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3	2,000	2,000	2,000
아.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	법 제76조제3항제3호	300	600	1,000

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 보호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	300	600	1,000
차.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1,000	2,000	3,000
카.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2	2,000	2,000	2,000
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3	3,000	3,000	3,000
파. 법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7호	300	600	1,000
하. 법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0호	300	600	1,000
거.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1호	300	600	1,000
너.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1호의2	300	600	1,000
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2호	300	600	1,000
러.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2	300	600	1,000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며.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7호	750	1,500	3,000
버.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8호	750	1,500	3,000
서. 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9호	750	1,500	3,000
어.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3	300	600	1,000
저.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9호의2	750	1,500	3,000
처.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4	300	600	1,000
커.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0호	750	1,500	3,000
터. 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1호	750	1,500	3,000

퍼.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3호	300	600	1,000
허.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4호	300	600	1,000
고.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5호	300	600	1,000
노.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6호	300	600	1,000
도.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7호	300	600	1,000
로.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8호	300	600	1,000
모.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법 제76조제3항제19호	300	600	1,000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보.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0호	300	600	1,000
소.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한도액을 증액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2	300	600	1,000
오.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3	300	600	1,000
조. 법 제58조의2(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4	300	600	1,000
초.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1호	300	600	1,000
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2호	300	600	1,000
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법 제76조제3항제23호	300	600	1,000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포.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4호	300	600	1,000
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2호			
1) 법 제7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	3,000	3,000
2) 법 제72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0	2,000	2,000
3)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4)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5) 법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50	750	750
6) 법 제7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00	600	600

7) 법 제76조제3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8)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비고: 러목부터 커목까지의 규정(서목과 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 는 <u>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u> <u>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u> <u>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u> <u>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u> <u>시행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제2조(윤리강령) ① ----- ----- ----- ----- --- <u>이용자</u> ----- ----- ----- ----- ----- -----.		제2조(윤리강령) ① ----- ----- ----- ----- --- <u>이용자</u> ----- ----- ----- ----- ----- -----.
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 방송 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u>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u> <u>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u> <u>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u> <u>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u> <u>권장할 수 있다.</u>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 여 고시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 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4장 <u>개인정보의 보호</u>		제4장 <u>정보통신서비스의</u>		제4장 <u>정보통신서비스의</u>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
증·관리 및 보호하기 위
한 설비

나. ~ 마. (생략)

② (생략)

제10조(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
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
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의 방법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
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
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
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

가. ----- 개인정보(「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
6에서 같다)---

나. ~ 마.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동의 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삭 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전달
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
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
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
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
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
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
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
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
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

<삭 제>

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
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
의 장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
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
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
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
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
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삭 제>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

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③ 삭 제

제14조의2(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

<삭 제>

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

<삭 제>

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
단

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
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
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
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
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

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
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
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
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
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
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
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
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
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
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삭제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제16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삭 제>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
호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2.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
행실적 및 활동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

<삭 제>

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

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
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
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
다.

<삭 제>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
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
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
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

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
을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하지 못한다.

제18조의2(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의
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
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
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삭 제>

<삭 제>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

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생략)

<신설>

제54조의2(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법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사후관리 및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취소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삭제>

등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공자 -----

-----.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6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2(광고성 정보전송 대응 센터) ①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1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전송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② 광고성 정보전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4.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삭 제>

제6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

호조치) ① 법 제63조제2항 단
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
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
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
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
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
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
표방법 등) ① -----

----- 제공자-----

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제공자와 -----

-----.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

-----.

----- 제공자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위반행
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
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
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
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
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
다.

②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
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제6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

<삭 제>

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신설>

③ 삭제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
탁한다.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에 관한 사항만 해당
한다)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
한다.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
과·징수

④ -----

-----.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

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생략)

⑤ (생략)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 법과-----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얻는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이 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 의 범위, 통지하여야 하는 정 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 법: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 의 범위 및 기준 등: 2020년 1 월 1일

4. 5. (생 략)

-----.

<삭 제>

<삭 제>

<삭 제>

4. 5. (현행과 같음)